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-99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9. 2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소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효성있게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10조 제1항 “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1항 “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1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제10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